



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

-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의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-

업 무 협 약 서(MOU)

안성시시설관리공단(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)과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)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안성시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안성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,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을 통한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본원칙)

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

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
2. 환경·안전등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지원 및 민간지원 연계
3.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력
4. 시설의 견학 및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
5. 기타 양측의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 (세부사항)

제3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 사항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유효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3년 단위로 연장된다.

제7조 (해 석)

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2019년 5 월 24 일

안성시시설관리공단

이 사 장

최 갑 선

최갑선

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
공동위원장

임 송 병

임송병